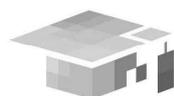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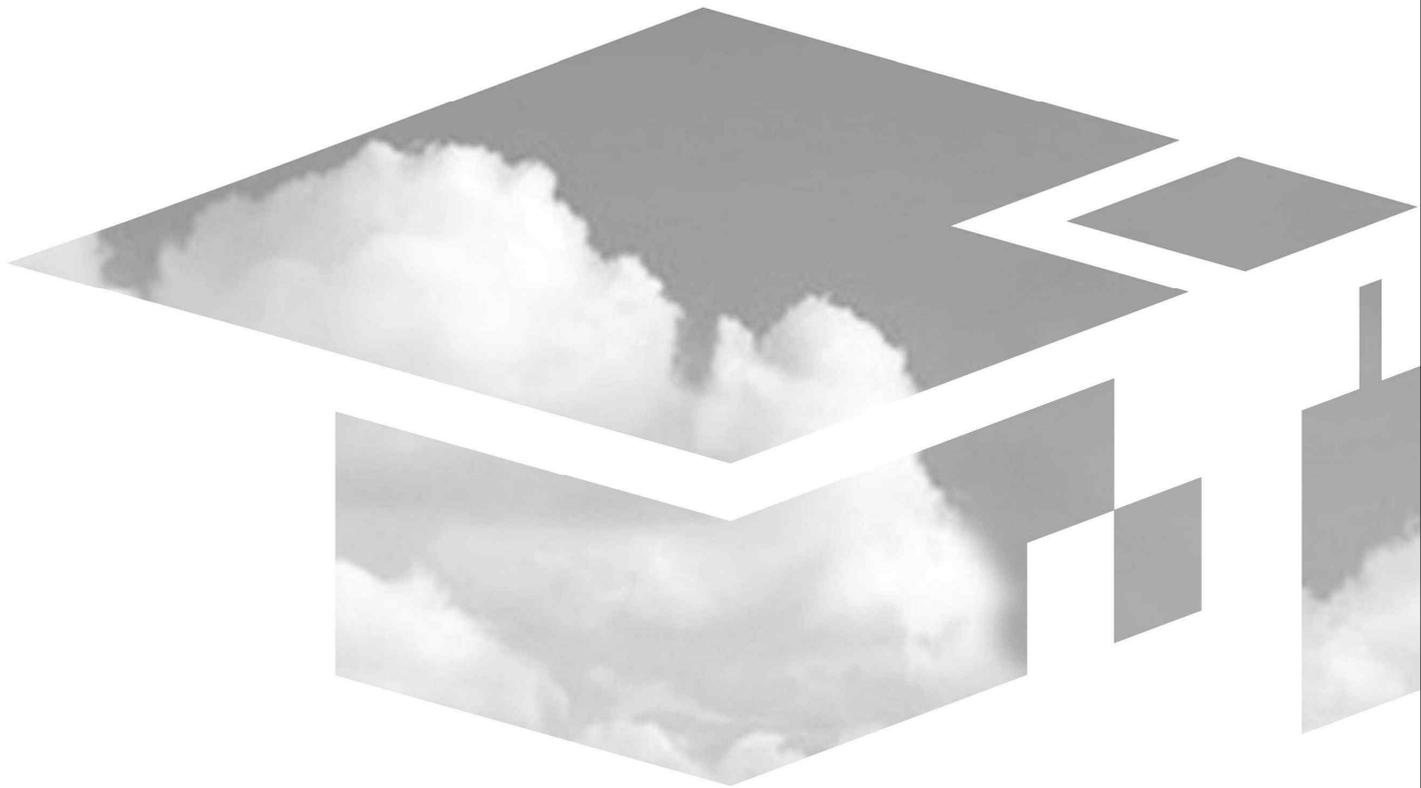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



한국장학재단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KOSAF**

목 차

제1장 총 칙

- 제1조 협약의 목적
- 제2조 협약의 체결
- 제3조 협약기간
- 제4조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 제5조 임기중 겸직 제한 등

제2장 성과목표의 설정 및 경영성과계획서의 작성

- 제6조 기관장 성과목표
- 제7조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등

제3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보고 및 평가

- 제8조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보고
- 제9조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제4장 보수 및 복리후생

- 제10조 보수체계
- 제11조 기본연봉
- 제12조 성과급
- 제13조 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 제14조 퇴직금
- 제15조 복리후생 등

제5장 보 칙

- 제16조 해임건의
- 제17조 협약의 해석
- 제18조 권리의 귀속
- 제19조 세금
- 제20조 협약서의 보관 및 통지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제2조 경과조치

제 1 장 총 칙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성과목표, 권한과 책임 및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체결)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은 이 협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협약이 성립된다.

제3조(협약기간) ① 이 협약의 협약기간은 본 경영성과협약 체결일로부터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6년 5월 23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 중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한 날부터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① 기관장은 한국장학재단(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최고 경영자로서 기관을 대표하고, 기관의 경영활동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기관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법과 기관의 정관 및 이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④ 기관장은 법 46조에 의한 기관의 경영목표와 경영성과협약서 제6조의 성과목표 달성,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 등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진다.
- ⑤ 기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경영성과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향후 정부가 실시할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 ⑥ 기관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에 따른 직무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조(임기중 겸직제한 등) ① 기관장은 기관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기관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중에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기관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기관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기관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기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장 성과목표의 설정 및 경영성과계획서의 작성

제6조(기관장 성과목표) ①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은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경영성과협약서에 기관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할 기관장 성과목표(이하 “성과목표”라 한다)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목표를 정한다. 다만, 성과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임기 종료 연도까지의 임기중 성과목표와 연도별 성과목표를 정한다.

② 제1항의 성과목표와 별도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기관장 경영목표는 법 제46조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경영목표로 같음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 체결시 법 제46조에 따른 중장기 경영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성과목표에는 기관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목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은 협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의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등) ① 기관장은 제6조의 성과목표와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는 경영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경영성과협약서에 첨부한다.

② 경영성과계획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을 위한 부채관리 및 방만 경영 등의 예방과 개선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경영성과계획서의 주요 내용, 작성방법, 작성절차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 3 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보고 및 평가

제8조(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보고) 기관장은 제7조에 의한 경영성과협약의 이행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성과협약 체결후 다음연도부터 매년 3월 20일까지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① 기관장의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성하는 전문평가단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0조(보수체계) 기관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하고,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이 협약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본연봉) ①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연간 184,347천원(₩184,347,000)으로 하되, 매월 12분의 1씩 기관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기관장의 보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기본연봉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③ 기관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성과급) ① 기관장의 성과급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성과급의 한도와 지급률 등은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성과급 지급시기는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완료 이후 3월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장이 법 제48조 제8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전연도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기관장이 사업연도 중에 취임하는 경우 취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임기 개시일부터 계산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기관장이 임기만료 또는 법 제48조 제8항 및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사업연도 중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성과급은 퇴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①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성과급 지급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 기관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 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 퇴임한 기관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기관장이 그 금액을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기관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기관에서 정한 보수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그 밖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복리후생 등) 기관은 기관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6조(해임건의) ① 이사회는 임기 중이라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이사회가 기관장의 해임건의의 의결할 경우에는 미리 기관장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건의 의결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용어 및 협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참여하지 아니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권리의 귀속) 기관장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그 밖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기관에 귀속되며, 기관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19조(세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 등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 징수한다.

제20조(협약서의 보관 및 통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협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며,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계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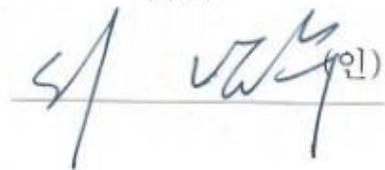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 체결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월의 기본연봉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최초의 급여지급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장학재단 정관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 서남수와 기관장 곽병선은 위 협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함.

2014년 3월 20일

교육부 장관

서남수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곽병선 (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계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 체결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월의 기본연봉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최초의 급여지급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장학재단 정관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 서남수와 기관장 곽병선은 위 협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함.

2014년 3월 20일

교육부 장관

서남수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곽병선

(인)

【첨부 1】

한국장학재단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양식은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경영성과계획서

(2013.05.24 ~ 2016.05.23)

2014년 3월

한 국 장 학 재 단

목 차

I. 기관 경영현황 및 경영환경 분석	
1. 기관 경영현황	15
2. 경영환경 분석	18
II. 중장기 성과목표 주요 내용	
성과목표 1. 대학생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활동으로 청년 신용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	19
1. 성과목표 내용 및 선정사유	19
2.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19
성과목표 2. 민관협력으로 행복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들의 생활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21
1. 성과목표 내용 및 선정사유	21
2.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22
III. 중장기 성과목표 실행계획	
성과목표 1. 대학생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활동으로 청년 신용지킴이 역할을 강화 한다.	23
1. 중소기업 취업 연계 희망사다리장학 사업 참여자 확대	23
2.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확대 운영	26
성과목표 2. 민관협력으로 행복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들의 생활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28
1. 권역별 행복기숙사 구축·운영	28
IV.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32
V. 경영성과계획서 총괄 요약표	34

I

기관 경영현황 및 경영환경 분석

1. 기관 경영현황

□ 기관 개요

구분	개 요
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이사회	▪ 이사장 [곽병선] ▪ 이사 [상임이사 2명, 상임감사 1명, 비상임이사 8명]
기관장	▪ 곽병선 (2013.05~2016.05)
설립일	▪ 2009.05.07
설립근거(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임직원현황	▪ 임원 4명, ▪ 직원 227명(정원 235명)

□ 기관 연혁

구분	연 혁
2008년	10월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2009년	2월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월 ▪ 한국장학재단 설립(이경숙 이사장 취임)
	6월 ▪ 한국장학재단 채권 신용등급 AAA획득
	7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직접대출 실시
2010년	1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및 든든학자금 시행 ▪ 인재육성 지원 사업 시행
2011년	7월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11월 ▪ '국가장학사업' 전담 기관 지정 ▪ 정부 금융형 기관 지정
2012년	1월 ▪ '국가장학사업' 시행
	5월 ▪ 일반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제도 시행
2013년	1월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확대
	5월 ▪ 제2대 곽병선 이사장 취임
	12월 ▪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상각채권 매각(국민행복기금)

□ 설립 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기본방안 수립 ('08.5)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9.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한국장학재단 설립일 : '09.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10.1)

○ 설립목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 *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 국가장학금 및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10.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 : 11부, 4실

(‘14년 3월 기준)



○ 인원현황

(단위 : 명, ‘14년 3월 기준)

구 분	임 · 직원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정 원	4	5	10	35	78	100	7	239
현 원	4	5	9	32	70	100	11	231
차이	0	0	△1	△3	△8	0	4	△8

□ 재무현황 및 예산

○ 수입·지출 예산총액 : 8조 9,134억원

(단위: 백만원, ‘14년 3월 기준)

구 분		일반 회계	인재육성 특별회계	기부금 특별회계	수익 특별회계	삼성기부금 특별회계	총 계
수 입	○ 정부출연금	3,866,724	-	-	-	-	3,866,724
	○ 차입금	3,109,500	-	-	-	-	3,109,500
	○ 융자원리금회수	1,330,825	304	-	-	-	1,331,129
	○ 자체수입	223,444	680	3,560	89	3,914	231,687
	○ 전입금	91,062	-	-	-	-	91,062
	○ 전기이월	61,168	23,377	3,147	430	195,154	283,276
합 계		8,682,723	24,361	6,707	519	199,068	8,913,378
지 출	○ 사업비	8,544,630	5,219	6,707	72	7,015	8,563,643
	○ 재단운영비	41,162	-	-	-	-	41,162
	○ 예비비	1,178	-	-	-	-	1,178
	○ 전출금	91,062	-	-	-	-	91,062
	○ 차기이월	4,691	19,142	-	447	192,053	216,333

2. 경영환경 분석

□ 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정부3.0 등 새로운 국정운영 변화

-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부 3.0 패러다임 도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동력 강화
- 민관 협력 강화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국민 행복 시대 구현에 기여

□ 수요자 중심의 '고객 감동'을 위한 변화 관리 요구

- 실질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요 증대
 - 학자금 지원의 지속적 확대로 등록금 부담은 경감되었으나 학생들의 미래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 서비스 요구는 증대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학자금지원액 (a, 억원)	12,920	22,156	25,255	38,577	51,140
총 등록금 규모 (b, 억원)	141,151	141,177	140,299	131,545	131,163
등록금 부담경감률 (%, a/b)	9.15	15.69	18.00	29.33	38.99

* 대학원 제외 학부 기준

- 국가와 사회가 지원한 자원의 효율적 운용 요구 증대
 - 학자금자원 운영의 합리화로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고객 중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요구됨

□ 재단의 사회적 책임성(Responsibility) 강화요구 증대

- 국가부채 증대에 따른 재단의 학자금채권관리 강화가 요구됨
 - '17년 부채 총액을 중장기재무전망('13.9월) 전망 대비 0.1조원(14.0조원 →13.9조원)를 감축
- 기관장 주도의 초효율 경영으로 재단의 방만경영 사례 근절

II

중장기 성과목표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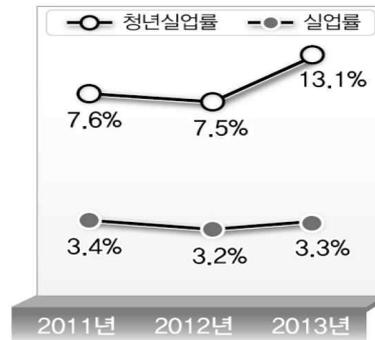
성과목표 1

대학생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활동으로 청년 신용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

1. 성과목표 내용 및 선정사유

□ 국가부채 증대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학생 신용 위협

- 부채 감축을 위한 학자금 대출 채권 관리 강화 요구 증대에 상환 곤란 청년들을 위한 배려 대책이 필요
 -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률 증대로 낮아진 대학생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이들의 사회진출 절벽으로 작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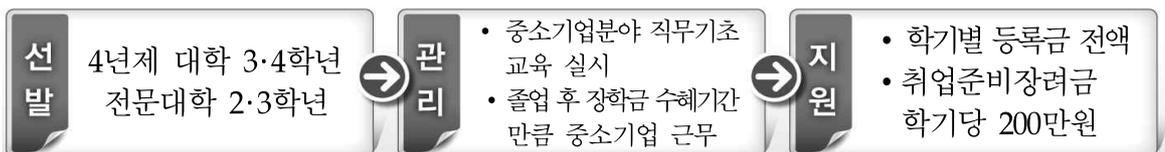
□ 대학생들의 취업연계 활동 강화로 청년 신용지킴 역할 필요

- 대학생들의 취업연계는 학자금 대출 상환능력 제고, 개인 신용 지킴, 학자금 부실채권 감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
 - 특히, 학자금 대출상환 때문에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들의 구제 활동을 재단이 적극적으로 수행

2.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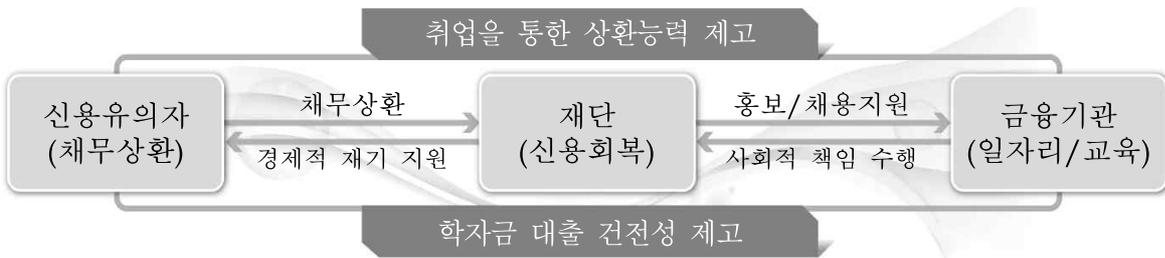
① 중소기업 취업 연계 희망사다리장학 사업 참여자 확대

-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학생들은 안정적 학업 전념,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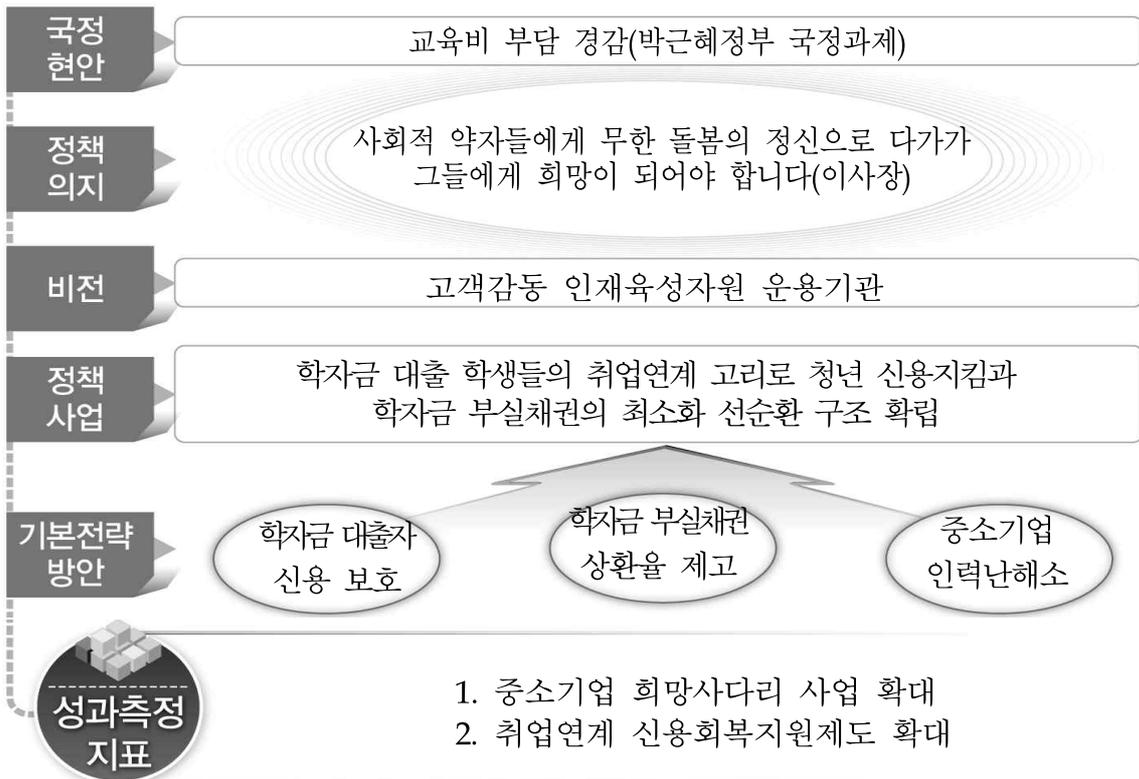
②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확대 운영

- 학자금 대출채권 신용유의자들에게 신용회복의 핵심 연결고리인 취업(일)을 중심으로 재기의 기회 제공
 - 취업-상환능력제고-신용회복을 통한 신용회복 환경 개선으로 청년 신용지킴과 재단부채 감축이라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Income Contingent Credit Recovery Service): 학자금대출 미상환자의 취업 및 신용회복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역할을 하고, 재단은 신용회복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성과목표 관리 체계도>



성과목표 2

민관협력으로 행복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들의 생활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1. 성과목표 내용 및 선정사유

□ 국정과제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정책 실현 필요

- 정부는 등록금 외 기숙사 부족 등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표명하고 국정과제 추진('13.5월)

- * (수용률) 국립대학 21%, 사립대학 17% 수준
- * (민자 기숙사비) 월 28~40만원을 수준(식대 제외)

- 대학생 등록금 외 대학생 주거문제가 사회 이슈로 급부상

〈대학생 주거관련 보도〉

- 한국일보, 뉴스천지 등('13.5.17) : '서울 대학생 월소득 40% 주거비로 사용'
- 연합뉴스, 뉴시스, 머니투데이 등('13.5.8) : '공공기숙사 지원비 본예산에 편성해야, '기숙사비 낮춰라', '공공기숙사 건축비는 전부 학생부담', '대학생 주거문제 외면한 국회, 정부 규탄 기자회견' 등
- MBC PD수첩('13.3.26) : '미래를 발목 잡는 대학가 방값'
- 국민일보, 연합뉴스('13.2.11) : '대학가 "개강 코앞인데 방이 없어요" 주요대학 기숙사 수용률 대부분 10% 못 미쳐'
- 경향닷컴('12.9.27) : '대학생 "월세 비싸 6년째 반지하 신세'
- KBS 뉴스('12.01) : '대학생 주거난...잠 잘 곳이 없다'
- 경향신문('12.02) : '대학생 절반은 쪽방에 산다'

□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 개발 필요

- 공공부채 증가에 따라 정부 재정 투입 여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
- 정부 3.0 추진전략에 따라 부처 간 협력과 민관협업을 통해 정부 재정 부담 및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행복 기숙사 건립

□ 대학생에게 나눔·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비금전적 지원 거점 구축이 필요

○ 장학금·대출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 등에 한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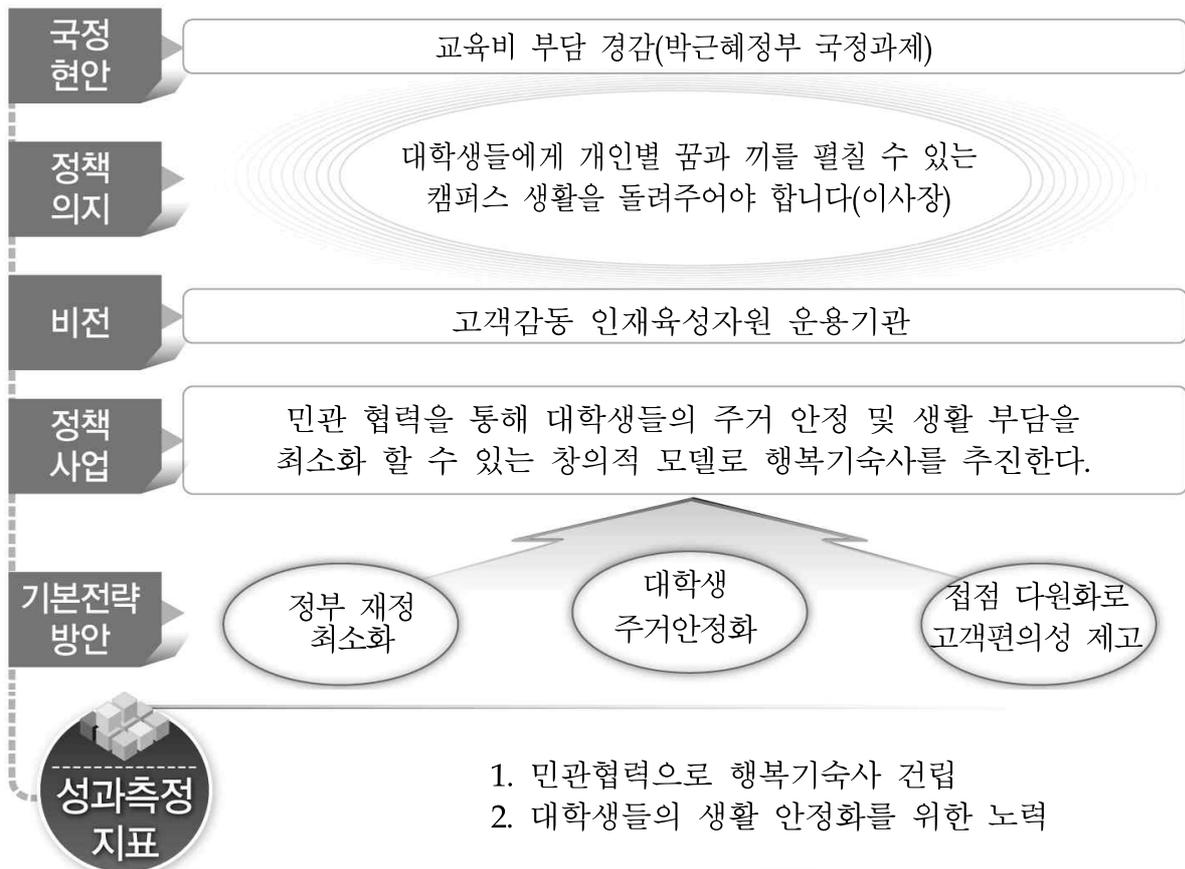
- 수요자 중심의 각종 현장 지원을 통해 고객의 감동 실현

2.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① 민관협력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 대학생의 안정적 주거 및 新 개념 인재육성 지원 공간 등을 제공하여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행복 기숙사」 건립 추진

<성과목표 관리 체계도>



III

중장기 성과목표 실행계획

성과목표 1

대학생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활동으로 청년 신용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

1. 중소기업 취업 연계 희망사다리장학 사업 참여자 확대

성과 지표	측정 방법	성과 목표치	연도별 성과목표치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업 참여자수	실적 확인	4,200명	1,200명	1,200명	1,800명	계량

① 성과지표의 개념 및 설정사유

-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을 전제한 장학금 지급으로 대학생에겐 꿈과 끼가 충만한 대학 생활을, 중소기업에겐 우수인력 연계
 - (학생) 학비와 취업준비 부담이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활
 - (기업) 안정적인 우수인력의 수급으로 지속성장 동력 확보
 - (국가) 학자금 대출 증대 억제로 재단의 부채 증대 억제효과, 중소기업 활성화로 국가경제 저변 강화

*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주요 내용>

- 사업규모 : 총 예산 100억 원, 약 1,200명 지원
-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및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매 학기)
- 신청자격 : (현장실습) 중소기업 현장실습(4주 이상)을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고용약정)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한 자
- 의무사항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 재단 주요 고개인 대학생들의 가장 큰 수요(학자금 부담 경감, 취업)와 정부(고객)의 요구(부채관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과제임

*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관협력,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과제로서 정부 3.0 추진 전략과의 접목이 요구되는 사업임

② 임기말까지 달성할 성과목표치 설정 및 산출근거

-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사업의 기획 출발부터 안정화까지, 정책과제 생애주기 전반을 기관장의 성과 목표로 설정
 - 신임 이사장의 역점사업으로 사업제안, 제도 초기설정, 예산확보로부터 가시적인 성과창출까지 임기 내 수행함을 목표로 함

* 신규 사업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기관장의 강력한 내·외부 조정능력과 자원 동원능력, 강력한 내부 리더십이 요구되는 과제임

- 정책과제 주기별 전반을 포괄하는 목표치를 설정 관리

과제주기	성과 지표	성과 목표	비고
설정 단계	부처협력 및 자원 확보	사업 시행	1차년도
초기 단계	사업 시행	사업 참여자 확보	1차년도
안정화 단계	· 참여자 증대 · 참여 중소기업 증대	· 사업 참여자 증가율 · 참가 중소기업 수	2차년도
성숙화 단계	· 참가자(대학생, 기업)의 만족수준 · 참여자의 중소기업 정착	· 참가학생 및 중소기업 만족도 · 참여 학생들의 중소기업 이탈률	3차년도

③ 연도별 성과목표치 설정 및 산출근거

- 임기 첫째 해도를 설계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사업 착수
-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 시작 첫 해부터 매년 1,200여명에게 중소기업 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 3년차 사업부터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1,600~2,000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 예정
-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적으로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지원 유지

4 연도별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매년 약 1,200명의 희망사다리장학생을 선정하여 등록금과 취업준비 장려금 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
- 우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지원
 - (온라인) 으뜸중소기업 일자리정보 사이트(www.smilestory.or.kr)에 희망사다리장학생 전용 채용관을 구축하여 잡매칭 상시 진행
 - (오프라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우수한 중소기업 채용정보 보유기관과 협업을 통한 잡매칭 박람회를 개최하여 고용률 향상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 중소기업연수원과 협업하여 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희망사다리장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http://kosaf.sbc.or.kr>)을 통한 중소기업 재교육 부담 완화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

- (민관협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 대학 담당자, 대학생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회 등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중소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온라인 상시 우수 중소기업 취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 (협업·소통) 중소기업진흥공단과 MOU체결을 통해 희망사다리장학생-으뜸중소기업 잡 매칭 박람회 개최

2.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확대 운영

성과 지표	측정 방법	성과 목표치	연도별 성과목표치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참여 기관수	실적 확인	16개	14개	15개	16개	비계량

① 성과지표의 개념 및 설정사유

- 학자금 대출 상환 미납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재기를 돕고 당당히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야 할 학자금대출이 도리어 신용유의자라는 굴레로 사회진출의 제약 요인이 됨을 예방 필요
 - 신용유의자들의 취업 연계 고리로 학자금 부실채권 증대를 억제하고 재단의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필요
 - 4,325억원*에 달하는 재단 부실채권의 건전한 상환을 위해 신용유의자들의 경제활동(취업) 연계 활동이 필요
- * 구상채권(3,003억원)과 일반채권(1,322억원)의 합('13년 12월 기준)

② 임기말까지 달성할 성과목표치 설정 및 산출근거

- 이사장의 역점사업으로 제도 초기설정, 자원확보, 민간협력 확보로부터 가시적인 성과창출까지 임기 내 수행함을 목표로 함

*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가 필수인 사업으로 기관장의 강력한 외부 조정능력과 자원동원 능력, 강력한 내부 리더십이 요구되는 과제임

- 정책과제 주기별 전반을 포괄하는 목표치를 설정 관리

과제주기	성과 지표	성과 목표	비고
설정 단계	부처협력 및 자원 확보	사업 시행	1차년도
초기 단계	사업 시행	사업 참여 기업 확대	1차년도
안정화 단계	· 참여자 증대 · 참여 기업 증대	· 참가 기업 증가율 · 사업 참여자 증가율	2차년도
성숙화 단계	· 참가자의 만족수준 · 참여자의 기업 정착	· 참가학생 및 기업 만족도 · 참여 학생들의 이직률	3차년도

③ 연도별 성과목표치 설정 및 산출근거

-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외부 자원 확보 및 참여기업체 확보에 많은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로 사업 확대

* 정부 재정지원(정부출연) 사업이 아닌 한국장학재단 자체추진사업임

-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소득을 얻도록 함으로써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참여가 핵심임

<최근 사업 추진 실적>

연도	'12년	'13년
인턴 지원자	594명	1,193명
취업 확정자	133명	148명
협약 기관	13개	14개

- 정부지원 없는 자체사업으로서 임기 중 지속적인 참여자 확대 유지라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진취적으로 추진
- 특히, 학자금 부실채권의 국민행복기금 매각 등으로 인해 ICCRS 대상자 대폭 감소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목표 제시

<부실채무자 현황>

(14.1.31 기준)

매각 전		매각대상		매각 후	
부실채무자수 (A)	신용유의자수 (B)	부실채무자수 (C)	신용유의자수 (D)	부실채무자수 (A-C)	신용유의자수 (B-D)
82,867	39,646	59,108	27,136	23,759	12,510

④ 연도별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참여기관을 적극 확대
 - 현재 우리금융지주 등 일부 금융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를 다양한 기관 및 기업으로 확대(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로 사회적 재무 건전성 강화 모델 제시
 - 신용유의자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지원자, 단기연체자, 과다채무자 등 채용대상을 최대한 허용하여 신용회복 적극 지원

성과목표 2

민관협력으로 행복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들의 생활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1. 권역별 행복기숙사 구축·운영 실행계획

성과 지표	측정 방법	성과 목표치	연도별 성과목표치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행복기숙사 구축·운영	실적 확인	1개소 운영	기반 마련	1개소 착공	준공('16년5월) 및 운영	비계량

① 성과지표의 개념 및 설정사유

-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지원 등을 위해 국유지 및 기부금을 활용하여 '국공립대 수준의 저렴한 연합 기숙사' 건립
- 원스톱 서비스 주거공간 중심의 학생종합복지센터 기능 구현
 - 대학생 1,000명 규모의 주거 기능과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기능이
복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추진 내용) 민간 기부금과 국유지를 활용하여 대학생 주거시설 건립 및 인재육성(지식봉사, 멘토링, 금융교육, 학자금 상담, 개방형 도서관 등) 지원
- (입주 대상) 대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지방 출신 우수 저소득층 대학생 선발
- (거주 비용) 정책연구 결과 및 국·공립대 기숙사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거주비용 산출(월 15만원 내외)

* 정부와 민간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학생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최소비용으로 기숙사비를 책정하여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 및 기숙사비 인하에 기여

② 임기말까지 달성할 성과목표치 설정 및 산출근거

- 「행복기숙사」 구축사업은 신임 이사장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함
 - 사업의 기획 출발부터 안정화까지, 정책과제 추진 생애주기 전반을 기관장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함

* 본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기관장의 강력한 내·외부 조정능력과 외부 자원 동원능력, 강력한 내부 리더십이 요구되는 과제임

* 특히 외부 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기관장의 소통 능력과 기관간의 협력 도모가 주요한 성공 요소임

- 정책과제 주기별 전반을 포괄하는 목표치를 설정 관리

과제주기	성과 지표	성과 목표	비고
설정단계	부처협력 및 제도마련	사업 추진 기반 조성	1차년도
초기단계	사업 시행	· 자원(건립비, 건축부지) 확보 · (시범) 사업 시행	2차년도
준공 및 운영단계	· 행복기숙사 준공 · 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 개발 운영	· 행복기숙사 운영 ·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증대	3차년도 (16년 5월)
성숙화단계	· 거점별 행복기숙사 확대 운영	· 참가학생 만족도 향상 · 거점별 행복기숙사 확대	4차년도

③ 연도별 성과목표치 설정 및 산출근거

- 임기 첫해 제도를 설계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사업 착수
- 2차년도에 (시범)초도 사업 단지를 선정하여 우선 착공하고 3차년도 부터 행복기숙사를 본격 운영
 - 인구 및 대학생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상담 및 수혜학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선정 예정
- 기관장 재임 3차년도인 '16년 5월에 입주를 목표로 기숙사 건립 공정관리

<참고1> 지역별 인구 및 재학생 분포 현황 (단위 : 명)

<지역별 인구 ¹⁾ >			<지역별 재학생수 ²⁾ >		
구분	지역	인구수	구분	지역	학생수
1	경기	11,379,459	1	서울	648,545
2	서울	9,794,304	2	경기	337,277
3	부산	3,414,950	3	부산	185,830
4	경남	3,160,154	4	충남	172,923
5	인천	2,662,509	5	경북	164,806
6	경북	2,600,032	6	대전	110,861
7	대구	2,446,418	7	전북	96,904
8	충남	2,028,002	8	경남	92,722
9	전북	1,777,220	9	충북	92,447
10	전남	1,741,499	10	강원	91,917

1) 통계청, 2010년 인구 총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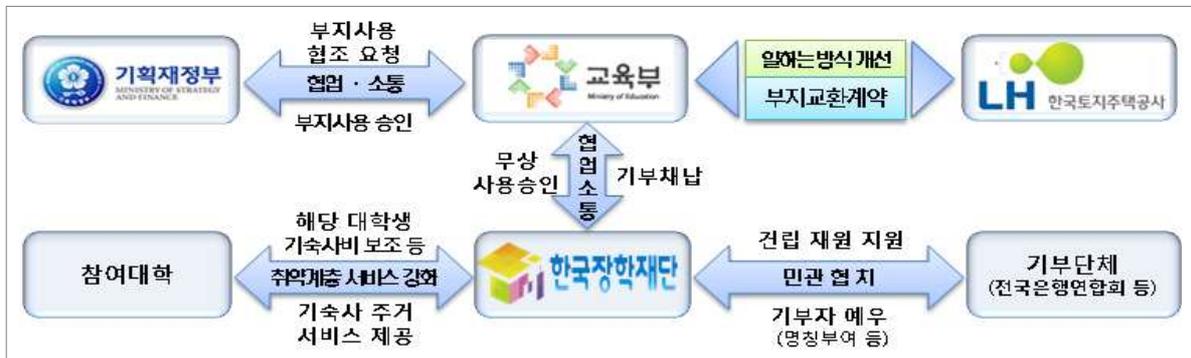
2) 대학알리미 자료, 2013년 기준

④ 연도별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 정부3.0 방식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정과제(“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수행

- 전국은행연합회와 재단은 협의를 통해 건립재원 확보
- LH공사는 부지 현황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고, 재단은 기숙사 부지를 파악하여 교육부에 확보 요청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LH공사에 보상할 전국의 택지개발지구를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로 사용승인
- 사용 승인된 부지와 LH공사가 소유한 기숙사 건립 대상 부지를 교환하여 부지 매입비를 절감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2. 중장기 성과목표 추진 일정

중장기 성과목표	실행 시기	완료 시기	주요추진방법	비고
대학생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활동으로 청년 신용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	'13년5월	'16년5월	정부 3.0 추진전략에 따른 협력과 소통을 중심으로 과제 수행	
- 중소기업 취업 연계 희망사다리장학 사업 참여자 확대	'13년5월	'16년5월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 중대를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 제고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확대 운영	'13년5월	'16년5월	민간기업 외 공공부문의 참여를 도모	
민관협력으로 행복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들의 생활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13년5월	'16년5월	민간,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다자협력을 통해 시범 지역부터 구축 운영 후 확대	
- 권역별 행복기숙사 구축·운영	'13년5월	'16년5월	빠른 자원 확보와 정확한 수요 분석을 통해 시범지역에 조기 운영 후 안정화 및 운영	

IV

부채 관리와 방만경영 예방·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1. 부채 관리 계획

- ◇ 부채관리는 재단채 발행 잔액의 적정수준 관리를 통하여 학자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
- ◇ 이를 위해 대학구조개혁 등에 연계한 불필요한 대출수요 완화 및 회수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재단을 운영
- ☞ '17년 부채 총액을 중장기재무전망('13.9월) 대비 0.1조원(14.0조원 →13.9조원)를 감축

- 부채관리는 학자금에 대한 불필요한 대출수요를 완화하고 회수관리를 강화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
 - 양 대책이 병행 추진되어야만 채권 발행소요가 최소화되어 학자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
- 제반 현실 여건을 감안, 우선은 대출금의 회수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
 - 제도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 정비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회수관리를 강화
 - 연체자의 대출금 상환 유도를 위한 신용지원 강화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간접 지원책도 강구
- 학자금대출제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신규대출수요 증가 유발은 가급적 억제
 - 대출수요 완화는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리스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체제를 재정비

2. 방만경영 예방·개선 계획

□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으로 경영효율화

- 퇴직금 가산지급제도, 업무외 사망시 유족보상제도 등 과도 복지 논란 소지가 있는 항목은 임기 중 조속히 폐지

□ 기관장이 솔선수범하는 비용절감

- 임원 차량을 대형차에서 중형차로 교체함으로써 유지비 및 관리비 절감
 - 기존 에쿠스, K9을 소나타로 교체함으로써 월 대여료 기존 대비 약 45% 절감(총 4대) 및 유류비 절감
 - * 연간 임차료 27백만원 절감, 연비 향상으로 유류비 연 6백만원 절감
- '14년 실행예산 편성시 임원 업무추진비 50% 감액
- 경상경비 낭비 요인을 발굴·조치함으로써 50억원 절감

□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신용유의자 구제

- 학자금 대출로 인한 소액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
 - 임직원의 자발적 급여기부를 통해 신용회복자금으로 활용하며, 특히 이사장은 '13년 경영평가 성과급 50% 기부약정서 既체결
- ※ 재단은 '13.12월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3,700만원을 조성하여, 신용유의자 198명을 구제한 바 있음

□ 방만경영 개선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환류

- 방만경영 8대 실행과제별 추진상황을 임원회의(매주) 및 확대간부회의(격주) 시 추진상황 보고 및 점검

V

경영성과계획서 총괄 요약표

평가지표	가중치	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연도별 성과목표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공통과제	30%					
▪ 리더십	15%	※ 별도작성 불필요 리더십·책임경영은 '2014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 이행실적 평가편람'에 따라 평가				
▪ 책임경영	15%					
◆ 성과과제	70%					
▪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20%	※ 기관 경영실적의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의 평가결과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20%					
▪ 대학생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활동으로 청년 신용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	15%	참여 실적 확인				
- 중소기업 취업 연계 희망사다리장학 사업 참여자 확대	7.5%	실적 확인	4,200명	기반 마련 1,200명	1,200명	1,800명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확대 운영(참여 기관 수)	7.5%	실적 확인	16개	14개	15개	16개
▪ 민관협력으로 행복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들의 생활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15%	실적 확인				
- 권역별 행복기숙사 구축 운영	15%	실적 확인	1개소 구축운영	제도 기반 마련	1개소 착공	준공 및 운영
합 계	100%					